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4. 1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4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형식)

가. 제안이유

○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의단위별로 지급(안 제4조제1항)
-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(안 제4조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지? ○ 모든 경제인은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의 요구로 인한 건 납득이 안 됨. 고문변호사는 몇 명인지? ○ 수입료는 얼마인지? ○ 부가세를 주면 수입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히 안 주어도 상관은 없으나 고문변호사의 요청이 있고 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함 ○ 4명입니다. ○ 수당은 월 20만원이고 수입료는 건마다 다르며 수입건수는 2000년 이견방 1건, 이양원 6건, 한성영 5건, 이현영 5건입니다. 2001년 이양원 5건, 김동섭 2건, 이현영 1건입니다. ○ 예. 수당은 부가세를 지급 안하며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
○ 취지에 동의함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60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고문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(안 제4조제1항)
-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함(안 제4조제3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지급한다"를 "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"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소송비용 등) ①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,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<신설></p>	<p>제4조(소송비용 등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지급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착수금 및 승소사 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 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